	규정	문서번호	TWP-A706	
		제정일자	2017. 02. 22.	
	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규정	개정일자	2018. 02. 19.	
		개정번호	1	페이지


목 차

- 제1조 목적
- 제2조 용어의 정의
- 제3조 조사내용
- 제4조 주관부서
- 제5조 관리부서
- 제6조 만족도 계획수립 및 시행
- 제7조 조사결과보고
- 제8조 사후 개선이행
- 제9조 개선여부 점검

부칙

작성부서	기획예산처	제정일자	2017. 02. 22.
------	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		승 인
직 책	담 당	산학입학처장	취업지원처장		교무학생처장	사무처장	총 장
서 명							
일 자							

	규정	문서번호	TWP-A706
		제정일자	2017. 02. 22.
	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규정	개정일자	2018. 02. 19.
		개정번호	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고 한다)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는 교육 수요자에 대하여 시행하는 만족도 조사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“교육수요자”라 함은 이 대학교로부터 제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인 재학생, 졸업생과 본교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인 학부모, 산업체 등을 말한다.

② “만족도조사”라 함은 이 대학교로부터 교육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 및 본교의 교육서비스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대학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말한다.

제3조(조사내용)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내용은 이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 및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하되 조사 대상에 따라 내용을 달리하여 조사할 수 있다.

제4조(주관부서) 각 행정부서는 업무분장에 따라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주관부서가 되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.

제5조(관리부서) ① 기획예산처는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관리 부서로 각 주관부서에서 시행한 만족도 조사의 시행계획과 결과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.<개정 2018.02.19.>

② 관리부서는 각 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관련 위원회에 이첩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.

제6조(만족도 계획수립 및 시행) 주관부서의 장은 교육수요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. 다만 조사대상, 조사목적에 따라 만족도 조사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.


제7조(조사결과보고) 주관부서의 장은 조사 자료를 분석·평가한 내용 및 개선안이 포함된 만족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 후 교내에 개선안 시행 관련부서나 학과에 제공한다.

제8조(사후 개선이행) 개선안 시행 관련 부서나 학과는 만족도 결과 보고서에 제시된 개선안에 근거하여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제9조(개선여부 점검) ① 교육수요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 사항의 이행여부 점검은 관리부서로 한다.

② 관리부서는 개선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대학교의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도록 한다.

부칙

	규정	문서번호	TWP-A706	
		제정일자	2017. 02. 22.	
	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규정	개정일자	2018. 02. 19.	
		개정번호	1	페이지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